

# 방 송 통 신 위 원 회

## 심의 · 의결

안건번호      제2016 - 08 - 030호

안 건 명      [REDACTED]의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

피 심 인      [REDACTED]  
[REDACTED]  
[REDACTED]

의결연월일    2016. 2. 4.

### 주         문

- 피심인은 해지요청한 이동전화 회선을 임의로 명의변경한 후 번호이동하는 행위 및 출국한 외국인의 이동전화 회선을 유지하는 행위를 각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.
- 피심인은 1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4단×10cm 또는 5단×9cm의 크기로 1개의 중앙일간지에 평일에 1회 공표한다. 이때,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.
- 피심인은 다음과 같이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되, 구체적인 업무처리 개선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.
  - ① 명의변경을 할 때에는 양도자, 양수자 모두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 각 서명을 받아야 하며, 신분증 및 가입신청서 등 제출서류의 위·변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  - ② 번호변경을 할 때에도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 서명을 받아야 하고 신분증 및 가입

신청서 등 제출서류의 위·변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나.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 중인 외국인이 출국·사망·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법령 및 약관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.

- 가입시 확인된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의 회선을 유지하여서는 안되며, 출국·사망을 알게 된 때에는 회선을 유지하여서는 아니된다.

#### 4. 피심인은 다음과 같이 약관을 변경하여야 한다.

외국인이 출국·사망·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 이용정지 후 해지하는 절차(소명 안내 → 이용정지 → 해지)의 규정 및 “이동전화 가입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실제 사용자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, 미성년자 등 실제 사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및 위임장 등 제출서류를 철저히 확인하여 가입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, 신규 가입을 신청한 이용자에게 이미 개통된 회선을 명의변경하여 판매하지 않는다” 등의 규정을 신설 또는 개정한다.

#### 5.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계획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#### 6. 피심인은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업무처리절차 개선계획 등을 포함한 시정명령 이행계획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#### 7.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.

가. 금액 : 5,500,000원

나. 납부기한 : 과징금 납부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

다. 납부장소 :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

# 이 유

## 1. 일반현황

○ 피심인은 「전기통신사업법」(이하 '사업법') 제5조에 따른 별정통신사업자로서 이동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.

- '15. 11월 기준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173,889명이다

※ 자료출처 : 미래창조과학부

## 2. 사실조사 결과

피심인이 제출한 자료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.

가. 해지요청한 이동전화 회선을 임의로 명의변경한 후 번호이동한 행위

○ '15. 2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해지요청한 이동전화 19회선을 임의로 명의 변경하여 번호이동하였다.

나. 출국한 외국인의 이동전화 회선을 유지하는 행위

○ '14. 8월부터 '15. 7월까지 출국한 외국인의 이동전화 5회선을 해지시키지 않은 채 이동전화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였다.

## 3. 위법성 판단

가. 관련 법 규정

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에서는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,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[별표 4] 5호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 행위 중 나목에서는 1) 이용자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, 3) 법령이나 이용약관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.

#### < 관련 규정 >

- ◆ 사업법 제50조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.  
5. 이용약관(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이용약관을 말한다)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
- ◆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① [별표 4] 5. 나. 이용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와 관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
1) 이용자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
3) 법령이나 이용약관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

#### 나. 위법성 판단

1) 해지요청한 이동전화 회선을 임의로 명의변경한 후 번호이동한 행위

○ 피심인이 '15. 2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해지요청한 이동전화 19회선을 임의로 명의변경하여 번호이동한 행위는, 이용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및 이용약관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로서 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[별표4] 제5호 나목 제1호 및 제3호 위반에 해당한다.

2) 출국한 외국인의 이동전화 회선을 유지하는 행위

○ 피심인이 '14. 8월부터 '15. 7월까지 출국한 외국인의 이동전화 5회선을 해지

시키지 않은 채 이동전화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는 행위는, 이용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및 이용약관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로서 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[별표4] 제5호 나목 제1호 및 제3호 위반에 해당한다.

#### 4. 시정조치 명령

##### < 관련 규정 >

- ◆ 사업법 제52조(금지행위에 대한 조치)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  - 6. 금지행위의 중지
  - 7. 금지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
  - 9.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업무 처리절차의 개선
  - 11.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◆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(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등) 법 제52조제1항제1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  - 1. 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이행계획서의 제출
  - 2. 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조치에 대한 이행 결과의 보고
  - 3. 법 제52조제1항제8호의 조치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보존 및 이용자 피해 사실의 통지

##### 가. 위반행위의 중지

피심인은 사업법 제52조제1항제6호에 따라, 해지요청한 이동전화 회선을 임의로 명의변경한 후 번호이동하는 행위 및 출국한 외국인의 이동전화 회선을 유지하는 행위를 각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.

##### 나.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

피심인은 사업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위 가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4단×10cm 또는 5단×9cm의 크기로 1개의 중앙일간지에 평일에 1회 공표한다. 이때,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.

## 공표문안

### 케이티파워텔(주)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

저희 회사(케이티파워텔(주))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①해지요청한 이동전화 회선을 임의로 명의변경한 후 번호이동하는 행위 및 ②출국한 외국인의 이동전화 회선을 유지하는 행위가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50조제1항제5조를 각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.

2016년 월 일

대표이사 ○○○

#### 다.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

피심인은 사업법 제52조제1항제9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 하되, 구체적인 업무처리 개선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.

1) ① 명의변경을 할 때에는 양도자, 양수자 모두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 각 서명을 받아야 하며, 신분증 및 가입신청서 등 제출서류의 위·변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  
② 번호변경을 할 때에도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 서명을 받아야 하고 신분증 및 가입 신청서 등 제출서류의 위·변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2)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 중인 외국인이 출국·사망·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법령 및 약관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.

- 가입시 확인된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의 회선을 유지하여서는 안되며, 출국·사망을 알게 된 때에는 회선을 유지하여서는 아니된다.

#### 라. 이용약관의 변경

외국인이 출국·사망·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 이용정지 후 해지하는 절차(소명 안내 → 이용정지 → 해지)의 규정 및 “이동전화 가입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실제 사용자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, 미성년자 등 실제 사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및 위임장 등 제출서류를 철저히 확인하여 가입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, 신규 가입을 신청한 이용자에게 이미 개통된 회선을 명의변경하여 판매하지 않는다” 등의 규정을 신설 또는 개정한다.

#### 마. 시정명령 이행계획서 제출

피심인은 사업법 제5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업무처리절차 개선계획 등을 포함한 시정명령 이행계획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#### 바. 시정명령 이행 결과의 보고

피심인은 사업법 제5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호에 따라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### 5. 과징금 부과

#### < 관련 규정 >

- ◆ 사업법 제53조(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)
  -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(중략)다만,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
- ◆ 같은법 시행령 제46조(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)
  -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.
  - ②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

- 한액 및 산정기준은 별표 7과 같다.
- ◆ 같은법 시행령 제47조(과징금의 산정방법) ② 법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2. 그 밖에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
- ◆ 「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」(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2-98호)  
**제3조(과징금 부과상한액)** ②법 제5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, 법 제5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,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행위는 10억원, 법 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위는 8억원을 각 과징금 부과상한액으로 한다.  
**제7조(필수적 가중)** ①위반 전기통신사업자의 위반행위 기간 및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의 50% 범위 내에서 별표 3에 따라 가중한 금액을 기준금액에 합산한다.  
**제8조(추가적 가중 · 감경)** 제7조에 따라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에 법 제53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행위의 주도여부, 위반행위의 고의 · 과실 여부,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의 협조여부,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중 금지행위의 지속 및 확대 여부, 위반행위로 인한 시장점유율 또는 가입자 수 변화 등 위반행위가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의 50% 범위 내에서 별표 4에 따른 금액을 가중 · 감경할 수 있다.

피심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업법 제53조에 따라 소정의 과징금을 부과한다.

#### 가. 과징금 부과상한액

사업법 시행령 제46조, 제47조 및 「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」(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2-98호, 이하 '과징금 부과 세부기준'이라 한다)제3조 제2항에 따라 피심인의 과징금 부과상한액은 8억원이다.

#### 나. 과징금 부과 시 고려사항

- 알뜰폰사업 초기단계('12년 본격 사업 개시), 알뜰폰사업자의 운영상황 및 시스템 등이 미비했던 점을 고려하여 "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"로 본다.
- 특정통신사업자로서 기간통신사업자와의 사업규모, 매출액 등에 대한 형평성을 감안하여 기준금액을 1천만원 ~ 5천만원으로 정하고,

위반행위 및 위반건수 등을 고려하여 ①10,000회선 초과, ②5,000회선 초과, ③1,000회선 초과, ④100회선 초과, ⑤10회선 초과 (10회선 이하는 과징금 부과 유예) 등 총 5단계로 차등 적용한다.

#### 다.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

##### 1) 해지요청한 이동전화 회선을 임의로 명의변경한 후 번호이동한 행위

###### ○ 기준금액

위반의 내용과 정도 및 위반행위의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“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”에 해당하고 위반건수가 10회선 초과 100회선 이하이므로 기준금액을 1천만원으로 정한다.

###### ○ 과징금의 결정

기준금액에 대해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, 위반기간 및 조사 협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가중 또는 감경 사유를 적용한다.

위반행위의 기간이 2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해당하므로 기준금액에 필수적 가중 10%를 가산하고, 위반행위가 과실에 의한 것(30%)으로 판단되며 조사에 적극 협조(20%)하였으므로 추가적 감경을 적용하여, 기준금액 1천만원에 10%를 가산한 금액에서 50%를 감경한다.

이에 따라 최종 과징금은 5백 5십만원으로 결정한다.

##### 2) 출국한 외국인의 이동전화 회선을 유지하는 행위

- 정상적으로 가입한 외국인이 서비스 이용 중 출국·사망·체류기간 만료여부를 사업자가 미리 인지할 수 없었던 점, 이와 동일한 사안으로 '15년 제20차 위원회 의결('15.5.13.)시 과징금 부과를 유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당해 과징금 부과를 유예한다.

## 6. 결론

상기 피심인의 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##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

위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, 행정심판법 제23조부터 제27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, 행정소송법 제18조부터 제20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

부위원장 김재홍 (인)

## 위 원 김 석 진 (인)

## 위 원 이 기 주 (인)

## 위 원 고 삼 석 (인)